광명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9조의4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 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한 선발시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위촉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.
 - ③ 위원은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·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(국·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)이어야 하며, 가급적 민간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. 〈개정 2015. 3. 6〉
 - ④ 인사위원회는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.
 -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 날까지로 한다.
- 제3조(기능) ① 위원회는 개방형직위 응시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.
 -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시험에 의하여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 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한다. 다만, 응시자 중 적격자가 1명뿐

광명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

- 인 경우에는 1명을 추천할 수 있고,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4조(위원장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5조(회의) ① 위원회의 최초 회의 소집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한다.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창성으로 의결한다.
 - 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- 제6조(사무처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
 - ②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,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주사로 하다.
- 제7조(선발시험 절차) 시험절차는 서류전형에 의한 형식요건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적격성 심사를 한다.
- 제8조(형식요건 심사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제출서류와 임용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합격처리한다.
 - 1. 제출 서류의 구비 여부
 - 2. 증빙서류에 대한 권한 있는 기관의 발행여부, 유효기간의 도과 여부 등
 - 3. 직무수행요건상의 임용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
 - ② 간사는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.
- 제9조(적격성 심사) ① 형식요건 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능력요건 등에 대한 해당직위의 적격성을 심 사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.
 - 1. 서류심사는 제출 또는 수집된 이력서·자기소개서·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통하여 능력요건 등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.
 - 2. 면접시험은 능력요건 등에 대한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 등을 실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.

(추 1)

- ② 적격성 심사를 위하여 능력요건 등 평가요소별 배점비중, 필기·실기시험 과목 및 배점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예정 직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되,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.
- 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이 응시자와 친 · 인척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
 - 2.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
 - ② 응시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.
 -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시험의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.
- 제11조(위원 등의 의무) ① 위원은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,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를 저해하는 언행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.
 -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선발시험 위원 및 간사 등은 회의 과정이나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2조(실비보상 및 시험수당) ① 위원의 회의 출석 및 출장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에서 「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〈개정 2016. 9. 26〉
 - ② 선발시험의 심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광명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5. 3. 6 훈령 제346호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5. 12. 11 훈령 제363호,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통장증 발급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〉 광명시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〈2016. 9. 26 훈령 제373호,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 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등 일부개정규정〉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서식] 〈개정 2015. 12. 11〉

서 약 서

본인은 이번에 광명시에서 시행하는 ○○개방형직위임용시험 시험(심사)위원 으로 위촉(임명)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시험(심사)위원으로 위촉(임명)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.
- 2.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.
- 3. 응시자와 친·인척 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.
- 4.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.

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2조 및 제82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48조에 의거 위반 사실이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며, 향후 5년간 시험(심사)위원 위촉(임명)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0 소속:

ㅇ 직 위 :

○ 성 명: (서명)

ㅇ 생년월일:

광명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